

건설산업기본법 제정 방향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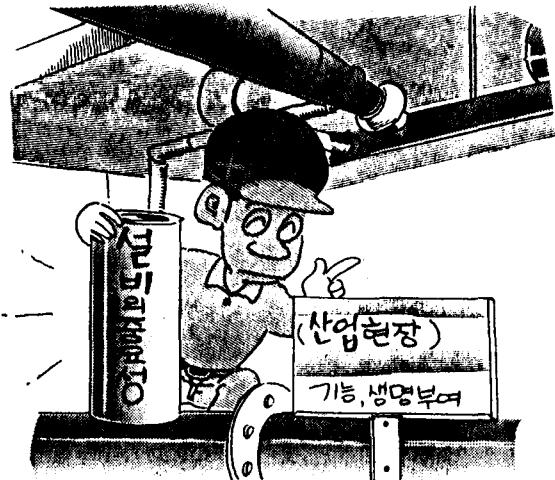
전문·일반 공동도급 허용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정 방향」을 마련하여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4월 29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발표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 제정되는 법으로, 건교부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안을 금년 6~7월께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건설산업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건교부에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무경험자에 의한 건설업체난립을 막기 위해 일반건설면허는 30~12개월 이상 전문건설 또는 주택건설 경력이 있는 업체에 한해 발급해주기로 했으며,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부실시공으로 면허취소된 자로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에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법으로 금지되는 일괄하도급의 개념에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되도록 하고 전문공사의 하도급이라도 발주공사가 공사의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하도급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하



수급인 선정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경우는 발주자의 의사에 따라 하도급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일반건설업체만 수주할 수 있는 일반건설공사라도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도급 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건설업체면허 주기와 신청기간 제도가 폐지되어 수시로 면허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관련공제조합들이 건설공사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되고, 각 조합간의 정보교류 등 상호협력과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6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